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제1조 - 제5조 생략 제5조의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table><tr><th>학 과 명</th><th>입학정원</th><th>학 과 명</th><th>입학정원</th></tr><tr><td>치기공학과(야)</td><td>20</td><td>환경안전보건학과(야)</td><td>19</td></tr><tr><td>물리치료학과(야)</td><td>30</td><td>응급구조학과(야)</td><td>15</td></tr><tr><td>유아교육학과(야)</td><td>18</td><td>안경광학과(야)</td><td>15</td></tr><tr><td>방사선학과(야)</td><td>30</td><td>보건의료행정학과(야)</td><td>24</td></tr><tr><td>치위생학과(야)</td><td>20</td><td>사회복지학과(야)</td><td>20</td></tr><tr><td>임상병리학과(야)</td><td>30</td><td>경찰과학수사학과(야)</td><td>8</td></tr><tr><td>작업치료학과(야)</td><td>20</td><td>컴퓨터정보학과(야)</td><td>15</td></tr><tr><td colspan="2"></td><td>합 계</td><td>284</td></tr></table> 제5조의3 - 제27조 생략 제28조(전과) ① 생략 ②학과(부)별 전과의 전입정원 및 전출정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로 정하되, 전출정원은 전출학과(부)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다만, HiT자율전공학부의 전출은 제한하지 않으며, 교원양성관련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 제36조 생략	학 과 명	입학정원	학 과 명	입학정원	치기공학과(야)	20	환경안전보건학과(야)	19	물리치료학과(야)	30	응급구조학과(야)	15	유아교육학과(야)	18	안경광학과(야)	15	방사선학과(야)	30	보건의료행정학과(야)	24	치위생학과(야)	20	사회복지학과(야)	20	임상병리학과(야)	30	경찰과학수사학과(야)	8	작업치료학과(야)	20	컴퓨터정보학과(야)	15			합 계	284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제1조 - 제5조 좌동 제5조의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table><tr><th>학 과 명</th><th>입학정원</th><th>학 과 명</th><th>입학정원</th></tr><tr><td>치기공학과(야)</td><td>20</td><td>환경안전보건학과(야)</td><td>16</td></tr><tr><td>물리치료학과(야)</td><td>30</td><td>응급구조학과(야)</td><td>15</td></tr><tr><td>유아교육학과(야)</td><td>18</td><td>안경광학과(야)</td><td>15</td></tr><tr><td>방사선학과(야)</td><td>33</td><td>보건의료행정학과(야)</td><td>18</td></tr><tr><td>치위생학과(야)</td><td>20</td><td>사회복지학과(야)</td><td>20</td></tr><tr><td>임상병리학과(야)</td><td>33</td><td>경찰과학수사학과(야)</td><td>8</td></tr><tr><td>작업치료학과(야)</td><td>20</td><td>컴퓨터정보학과(야)</td><td>15</td></tr><tr><td colspan="2"></td><td>합 계</td><td>281</td></tr></table> 제5조의3 - 제27조 좌동 제28조(전과) ① 좌동 ②학과(부)별 전과의 전입정원 및 전출정원은 별도로 정하되, 전출정원은 전출학과(부)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한다. 다만, HiT자율전공학부의 전출은 제한하지 않으며, 교원양성관련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의 전입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 제36조 좌동	학 과 명	입학정원	학 과 명	입학정원	치기공학과(야)	20	환경안전보건학과(야)	16	물리치료학과(야)	30	응급구조학과(야)	15	유아교육학과(야)	18	안경광학과(야)	15	방사선학과(야)	33	보건의료행정학과(야)	18	치위생학과(야)	20	사회복지학과(야)	20	임상병리학과(야)	33	경찰과학수사학과(야)	8	작업치료학과(야)	20	컴퓨터정보학과(야)	15			합 계	281
학 과 명	입학정원	학 과 명	입학정원																																																																						
치기공학과(야)	20	환경안전보건학과(야)	19																																																																						
물리치료학과(야)	30	응급구조학과(야)	15																																																																						
유아교육학과(야)	18	안경광학과(야)	15																																																																						
방사선학과(야)	30	보건의료행정학과(야)	24																																																																						
치위생학과(야)	20	사회복지학과(야)	20																																																																						
임상병리학과(야)	30	경찰과학수사학과(야)	8																																																																						
작업치료학과(야)	20	컴퓨터정보학과(야)	15																																																																						
		합 계	284																																																																						
학 과 명	입학정원	학 과 명	입학정원																																																																						
치기공학과(야)	20	환경안전보건학과(야)	16																																																																						
물리치료학과(야)	30	응급구조학과(야)	15																																																																						
유아교육학과(야)	18	안경광학과(야)	15																																																																						
방사선학과(야)	33	보건의료행정학과(야)	18																																																																						
치위생학과(야)	20	사회복지학과(야)	20																																																																						
임상병리학과(야)	33	경찰과학수사학과(야)	8																																																																						
작업치료학과(야)	20	컴퓨터정보학과(야)	15																																																																						
		합 계	281																																																																						

현행	개정
제37조(학점인정) ①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 내·외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공학점은 졸업학점의 15%이내에서, 교양학점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학점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편입학한 사람은 전적대학의 교과목 이수내용 및 이수학점을 심사하여 기준학점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이수케 한다. 단,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편입학한 사람은 전적 대학의 교과목 이수 내용 및 이수 학점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잔여 학점을 이수케 한다. 단, 각 학년별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수한 경우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입영·복무중인 자(입학 전의 경우도 포함)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범위, 교과목 이수 인정, 학점교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
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진로탐색 기회 마련 등을 위한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학점인정·학점교류협약을 맺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점인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인턴십운영에 따른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한다.	< 삭제 >
⑥입학 후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 삭제 >
⑦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점이거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삭제 >
⑧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최대 4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삭제 >
⑨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점인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삭제 >
⑩입학 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강좌 등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삭제 >
⑪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 중 선별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교양 2학점, 전공 3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삭제 >
⑫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인정, 학점교	< 삭제 >

현행	개정
<u>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 제38조 - 제90조의2 생략 <신 설>	제38조 - 제90조의2 좌동 <u>부 칙</u> <u>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u>